

토론회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일 시 | 2021년 11월 3일(수) 10: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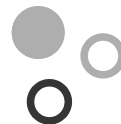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1년 11월 3일(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패널 위주로 참석, 온라인으로 진행)
- 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 진행 순서

구분	시간	주요 내용
개 회	10:00 ~ 10:05	• 내외빈 및 패널 소개
인사말	10:05 ~ 10:20	• 인사말 :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유동수 국회의원 (가상자산 TF 단장) • 축 사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영진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병욱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간사)
지정토론	10:20 ~ 11:40	• 좌장 : 송두한 부원장 (민주연구원) • 발제 : 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 토론 : - 이정엽 회장 (블록체인법학회, 부장판사) - 박주영 과장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김갑래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 장성원 사무처장 (핀테크 산업협회) - 강동익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청중토론	11:40 ~ 11:45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유튜브 댓글 참여)
마무리	11:45 ~ 11:50	• 마무리 발언



Contents

■ 인사말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1
유동수 국회의원(가상자산 TF 단장)	3

■ 축 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5
----------------------	---

■ 발제문

발제 1. 가상자산 과세방안 및 제반 문제점	7
-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발제 2.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	19
-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인사말



노 응 래
민주연구원장

가상자산의 미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 산업 육성의 제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은 미래의 유망자산인가 아니면 거품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어쩌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생산하고 분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경제학의 근본 이슈와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열풍이 점점 가열되는 가운데 전세계 가상자산 규모는 2018년 초 989조원에서 2021년 9월 2,774조원으로 3년만에 무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누적 이용자수는 2020년 12월 147만명에서 2021년 7월 723만명으로 7개월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일일 평균 거래금액도 2021년 4월 22조원을 돌파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하루평균 거래금액인 24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의 수립과 함께 과세 필요성도 강조되는가 하면, 가상자산의 위험성도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뒷받침이 늦어지면서 많은 혼선과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와 ‘가상자산 과세’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동시에 타당합니다.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시킬 때,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현장의 심각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투자자들의 보호책 마련을 논의하고, **적어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오문성 교수님,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토론을 위해 함께 해주신 이정엽 판사님, 김갑래 연구위원님, 장성원 사무처장님, 강동의 부연구위원, 안창국 단장님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송영길 대표님과 유동수 가상자산 TF단장님, 김영진 의원님과 김병욱 의원님 그리고 유튜브 참여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연구원장
국회의원 노 응 래

인사말



유 동 수

국회의원(가상자산 TF 단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가상자산 TF**와 함께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민주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님**,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현재까지,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여 과세가 현실화된다면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큼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한 달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계획을 반대하는 4개의 청원이 총 4만 6,6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들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내년 제도 시행 후 금융당국, 투자자, 거래소 등 시장에 혼란 발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의 경우 상당 폭의 비과세 구간이 있고, 양도차익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함에 비해, 우리나라는 250만원의 비과세한도에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대체재로 보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과세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과세 기준이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트래블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거래소 간 가상자산이 이동할 때 취득원가를 파악하기 어렵고, 가상자산이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할 때는 더욱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취득가 입증이 어려운 가상자산에 대해 취득가를 0원으로 추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자산과 달리 장외거래, P2P거래, 거주자의 해외거래소 이용 등 다양한 예외 상황으로 인한 탈세 허점이 많으나 이를 대비한 철저한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논의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없는 과세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제도 및 시행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 개최는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정부, 업계, 학계의 지혜를 모아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단장으로서 저 역시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유동수**

축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단장이신 유동수 의원님, TF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시는 김영진 의원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전 즈음, 가상자산 붐이 국내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가 최소 8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다가오는 물결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덮친 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가야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이 없어 시세조종, 다단계 판매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또 내년부터 가상화폐 과세가 유예 없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이 토론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과세 시행에 앞서 현안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투자자 보호방안을 모색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전문가들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1

가상자산 과세방안 및 제반 문제점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가상자산 과세유예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가상자산 과세방안 및 제반 문제점

2021. 11. 3.

오 문 성

한양여대 교수 /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발표자 약력



오문성

-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소장
-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 심사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 공기업 경영평가단(비계량) 위원
-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경영학박사(회계학 전공)
- 행정학박사과정(정책학 전공)수료
- 경제학박사과정(재정학 전공) 재학
- 심리학석사
-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가상자산이란?

• 가상자산(virtual asset)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호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A)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B)은 제외한다.

- 가. 화폐·채권·유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6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상자산: A-B----결국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포함하는 **암호자산(crypto asset)**이 된다.

그러므로 **특금법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은 암호자산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가상자산의 의미가 암호자산의 의미보다 넓어 B를 포함한 개념이다)



가상자산의 자산분류

• 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통화 분류(2019-I-KQA017, 2019.12)

【배경 및 질의】

●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를 보유한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 회사가 보유한 가상통화는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었으며, 관할기관(중앙 당국)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고,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가상통화는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는가?

【답변】

질의대상 가상통화(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불림, 이하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판단근거】

● 회신대상은 ①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② 관할 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③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상통화로 한정한다.

● 가상통화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 위험이 크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통화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가상자산의 자산분류

- ✓ 비트코인 등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해석은 비트코인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K-IFRS 제1038호에서는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속성으로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K-IFRS 제1038호 제57문단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6가지 요건 즉,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우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영업권은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은 아니지만 K-IFRS 제1103호에 의하여 인식되는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K-IFRS상 무형자산의 속성으로 평가해보면 크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인 특허권, 저작권 등과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 식별이 불가능한 영업권이 무형자산에 속하여 있다.

-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에 속한다면 이 중 어느 자산과 가장 닮았는가?

비트코인은 식별이 가능하므로 영업권과는 괴리가 있고 개발비와 같이 내부적으로 창출되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정도의 6가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보는 개발비와도 유사한 성격의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특허권, 저작권과 같이 일정비용을 투입하여 그 사용을 일정기간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와는 비교인데 비트코인이 특허권, 저작권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성격의 자산도 아니기 때문에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정의규정에 부합되는 것이외에는 특별히 무형자산에 속하는 자산들과의 동질성을 찾기 힘들다.

5

가상자산의 자산분류

- ✓ 비트코인을 무형자산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형자산에 속하는 다른 자산과의 동질성을 찾기 힘들어서 부자연스러운 분류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의 자산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가치변동의 모습을 본다면 주식과 같은 성격의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성격을 분석해 보자면 금융자산은 K-IFRS 제1032호 제11문단에서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계약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에 비트코인이 부합하고 있지 못한 점이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에 포함시키기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무형자산과 금융자산의 둘 중 하나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금융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분류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은 주식의 그것보다 더 변동성이 커서 자산의 평가는 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며, 최근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선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무형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가깝다.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금융자산의 성격이 금융자산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이유라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게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장하면 된다.

비트코인은 회계적으로 무형자산보다는 금융자산에 가깝다. 다만 신종자산이기 때문에 기존의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GAAP은 만고불변의 철칙이 아니다. 시간이 가면서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GAAP이 새로 제정되어야 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 제정 될 것으로 생각한다.

6

가상자산의 자산분류

✓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가 무형자산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무형자산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보니 양도차손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 해줄 수도 없다.

양도차손의 이월공제를 해 주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차손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한 어불성설이다.

비트코인을 신중금융자산으로 보는 GAAP이 새로 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우리 세법도 주식의 거래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과세방법도 주식과 같은 정도의 금액을 공제해주고 이월결손금도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7

가상자산 과세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의 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4조의 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소득세법상 비트코인 과세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부칙 제5조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64조의 3제2항, 제70조 제2항, 제84조 제3호 및 제164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거주자	비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 (양도금액 - 취득금액 - 부대비용 - 250만원) x 20% ● 원천징수 안함: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과세: min(양도대가의 10%, 양도차익의 20%) ● 가상화폐사업자가 원천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기재부 세법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 ✓ 세법상 상표권 등 무형자산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9

소득세법상 비트코인 과세

• 소득세법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은 허용하고 있음.

●다만, 손실의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다른 금융상품과 형평성 문제(주식의 경우 손실에 대해서는 5년까지 이월공제 가능)

●기본공제 금액 및 세율

금융투자소득:

- 5,000만원 공제,
- ~3억원 20%, 3억원 초과 25%

가상자산:

- 250만원 공제, 20%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의 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②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4조의 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가상자산의 자산분류상 쟁점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인가? 금융자산인가?

●무형자산의 개념: K-IFRS 제1038호(문단8/17/21)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미래 제조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개념

-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계약**

●금융자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으로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주식과 같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자산이므로 **특수한 형태의 금융자산으로 볼 수는 없는가?**

11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인가? 금융자산인가?

●(기재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임.

●무형자산인 저작권, 상품권, 영업권, 점포임차권 등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음.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성격이 특징

일부는 기타소득의 특징을 가지겠지만 상당한 가상자산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사업소득에 가까움. 현실적으로 주식 등의 매매와 유사함.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예: **분양권,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회원권 등은 양도소득으로 과세**) → **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과 과세 형평성 문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min(양도대가의 10%, 양도차익의 20%)** 원천징수 →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구조**. 비거주자는 취득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실이 났는데도 과세될 수 있음

12

결론

- 가상자산의 회계상 자산구분: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가 **무형자산으로 분류**(판매목적인 경우 재고자산)
- 가상자산의 과세: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에 착안하여 제27호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그러나 **가상자산**은 본문에서 언급한 이유로 비트코인의 성격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임**. 회계기준상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금융자산의 성격이 금융자산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이유라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포함할 수 없게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장**(해석의 확장이나 새로운 정의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하면 됨.
- 무형자산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보니 양도차손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 해줄 수도 없음.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차손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한 **어불성설임**. **비트코인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GAAP이 새로 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우리 세법도 주식의 거래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과세방법도 주식과 같은 정도의 금액을 공제해주고 이월결손금도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법이 독자적으로 금융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왜냐하면 회계기준과 세법이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13

가상자산과세 유예논의: 과세 인프라 구축이 된 상태인가?

- 가상자산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있다” 라는 과세의 기본원칙상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론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없음.
- 그러나 가상자산은 신종자산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산이라는 확신이 없었고 심지어는 17세기 류을립열기로 비유할만큼 광풍으로 보아 과세를 할 입법적, 행정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 이러한 분위기는 국세청의 빗벌 과세를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었으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상자산과세에 대한 특별한 입법이 없었음에도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불이행은 이유로 빗벌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과세했다는 것이 특이한 점임. 과세관청은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였음.
- 신종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종자산 과세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현재의 과세인프라는 아직 이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는 생각임.
- 과세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입법적, 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함.
 -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거래 즉, P2P거래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는 거래에 대하여 먼저과세하고 추가적으로 과세환경을 구축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처음 과세를 하는 시점에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이는 가능한 주장이지만 가상자산의 거래가 원칙적으로 P2P거래가 기본인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P2P시장에 과세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은 납세자간 형평에 크게 벗어나는 상황이 됨.

14

- 전자지갑에서 옮기는 경우 취득가액을 입증 못하면 취득원가를 "0"로 보는 국세청입장 문제있음" 입증책임은 추정규정 (입증책임의 전환) 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있다고 보아야 함
- 가상자산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유사한 자산인 주식과의 형평성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함(공제금액 및 이월결손금 공제문제)
- 가상자산에 대하여 회계기준은 무형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득세법이 기타소득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계기준에 맞추어 가상자산의 성격을 적절하게 간파하지 못한 것으로 금융자산으로 보아 과세해야 함(회계기준과 세법은 꼭 일치할 필요없음)
- 해외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는 경우 거래의 포착은 가능한가?
- 디파이서비스에 대한 과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원천징수: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이 이자수익인가?
: 가상자산을 화폐로 보지 않는다면 이자수익으로 보기 힘들
- NFT(가상자산은 아니지만 결제나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 특금법에 의하면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이라고 보아야 함)에 대한 과세: 포기?—NFT가 표창하고 있는 자산의 성격에 의하여 과세방법이 정해져야 함 (서화, 책자 등)
- 상장폐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 부재(A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되었으나 B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되지 않은 경우/A와 B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거래소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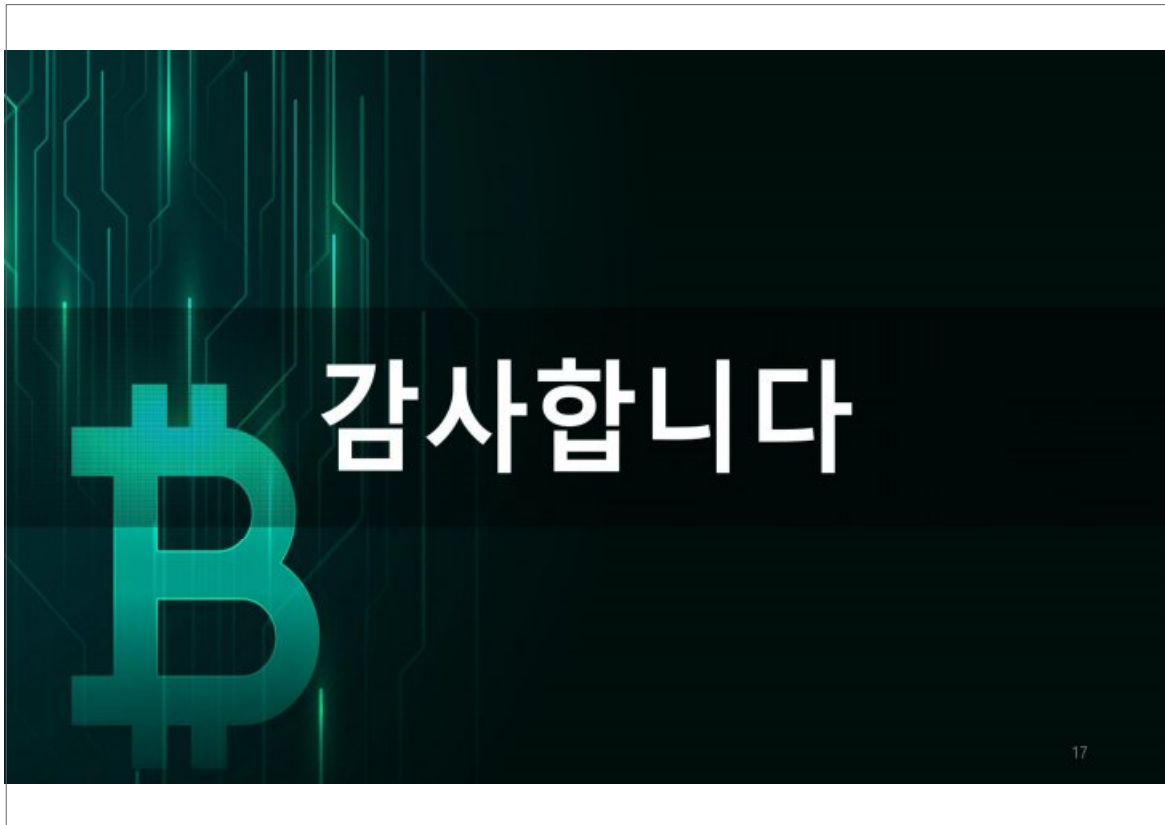
15

-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익명성이 매우 높은 경우 거래의 추적은 가능한가?(모네로, 제트캐시 등)
- 비상장코인의 평가기준은?
- 내년 3월까지 TRAVEL RULE 구축해야 하지만 1월부터 과세시작하는 것도 과세환경 미비의 이유가 됨
-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은 특금법에 규정해야 할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을 따로 입법하여야 할 것임
- 이런 이유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유예는 여야 의원이 대체로 그 생각이 일치하고 있음.

소결: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중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조금은 사소한 성격의 문제까지도 언급하였음. 사소한 문제는 과세를 시작하고 나서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음.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그러므로 가상자산분야에 대한 과세관련 입법의 합리성과 과 실제 징수를 대행하는 과세관청측면에서 징수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를 추가로 보완하고 나서 과세를 시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16



발제 2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I. 사례를 통한 가상자산 과세안의 문제점 검토

1.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 간 교차거래

※ 단, 계산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는 없다고 가정

(취득과정)

① 국내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해외거래소로 보냄

국내거래소	⇒	해외거래소
비트코인 구매		비트코인
개당1천만원×10개		개당 800만원×10개 ※김치프리미엄, 가격급락 영향
투자원금 총 1억원		8천만원

②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A코인 구매

해외거래소	
비트코인	A코인
개당 700만원×10개 ※비트코인 가격 하락	개당 10만원×700개 구매
총 7천만원	7천만원

③ A코인의 국내상장 후 국내거래소 이전

해외거래소	⇒	국내거래소
A코인		A코인
개당 20만원×700개 ※A코인 가격 상승		개당 25만원×700개 ※김치프리미엄, 가격급등 영향
1억4천만원		1억7천5백만원

④ 2차에 걸쳐 매도 진행

국내거래소	
1차 A코인 매도 (2022년)	2차 A코인 매도 (2023년)
개당 25만원×100개	개당 5만원×600개
총 2천5백만원	총 3천만원

⑤ 선입선출법 적용 시 과세 결과

2022년도 : 275만원		
매도가	25만원×100개	2천5백만원
매수가	10만원×100개	1천만원
차액	15만원×100개	1천5백만원
세금	(1천5백만원-250만원)×0.22(종합소득세+지방세)	275만원

(요약)

- 1억 원의 투자원금으로 국내 미상장 코인을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매수해 국내 상장 이후 국내거래소에서 매도한 결과, 실제로 4천5백만 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275만원의 세금이 부과됨

2023년도 : 0원		
매도가	5만원×600개	3천만원
매수가	10만원×600개	6천만원
차액	-5만원×600개	-3천만원
세금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로 과세 대상 제외	0원

(문제점)

① 2년에 걸친 매도결과 45%의 원금 손실이 났으나 당해연도의 손익통산만 허용돼 275만원의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남

※ 주식은 2023년부터 과세할 예정으로, 5천만 원까지 기본공제, 5년간 손실액 이월공제 가능

② 해외거래소에서 A코인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김치프리미엄, 매매과정 중 가격변동)의 부대비용 포함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져 약 94만3천원의 과세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부대비용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투자자	국세청
필요경비 (취득가액+부대비용 등)	100,000,000원	70,000,000원
개당구매가	142,860원 (1억원÷A코인 700개)	100,000원 (7천만원÷A코인 700개)
2022년도 과세대상 소득 (매도가-매수가)-기본공제액250만원	8,214,000원	12,500,000원
2022년도 과세금액 (기타소득세20%+지방세2%)	1,807,080원	2,750,000원

2. 취득원가 산정 및 증빙이 어려운 경우

(발생요인)

① 오래 전 해외거래소 또는 현재 폐업된 거래소에서 구매해 매수시기 및 가격 확인을 위한 계정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② 특정 플랫폼에 가상자산을 예치시켰을 경우에만 얻어지는 에어드롭, 커스티디, 스테이킹 보상

③ 콘텐츠 제공, 댓글, 추천/비추천, 설문응답, 견기, 출석체크, 정보제공 등 다양한 플랫폼 활동의 대가로 받는 리워드토큰

※ 리워드토큰은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토큰이코노미’를 가장 잘 구현한 보상체계

④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ASIC컴퓨터 등을 구매해 직접 채굴(기기값, 채굴공간, 전기료, 냉각시설 비용 소요)하거나 클라우드 마이닝 회사를 통한 간접채굴(투자원금 및 수수료 발생. 경우에 따라 원금손실)

⑤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빈번히 여러 종목에 걸쳐 반복매매한 경우

(문제점)

- ① 과세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시켜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취득원가를 “0원”으로 처리해버리는 과세 편의주의
- ② 특정 가상자산의 플랫폼 예치로 얻어진 금융소득적 토큰과 플랫폼 활동에 따른 리워드 토큰 등의 취득가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 마련 미비
- ③ 가상자산의 거래특성을 무시한 선입선출법 적용으로, 취득시기가 불확실한 코인이 다수 포함되면 선입선출에 따른 취득원가 파악불가

예) 거래소 외 활동(에어드랍, 리워드 등)으로 과세기간 내 취득시기가 불명확한 100개의 A코인과 거래소 매매로 얻은 100개의 A코인을 함께 보관하다가, 연말에 100개 매도했을 경우 가격별로 선입한 코인 수량 파악이 어려워 선입선출법 적용 불가능

취득경로	거래소 (2022.8.31.)	거래소 외 (2022년간, 불규칙하게 취득)
수량	100개	100개
개당 매수가격	10만원	?
매도(2022.12.31.)	20만원 × 100개 = 2000만원	

II.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1.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 ①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거래규모 22조7천억원, 투자자 700만명, 거래소 예치금 64조8천억 원에 이를 만큼 성장했으나 가상자산의 제도적 인프라 미비해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 증가 (유사수신, 다단계, 거래소 해킹, 사기성 거래소 이용 등)
 - ※ 국내 주요거래소 가입자 규모가 업비트 494만3,853명, 빗썸 163만2,660명, 코인원 65만5,080명, 코빗 10만5,219명으로 중복가입자를 제외해도 이미 700만 명은 넘어선 것으로 추산
 - ※ 거래소 예치금은 ISMS 인증거래소 61조7,311억원과 미신고 거래소 2조3,496억원 합산
- ② 현행 과세안이 인프라 미비,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부족, 소득분류의 적절성 논란에도 진행되는 근본요인은 디지털자산으로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
- ③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개인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 거래

의 안정성·투명성 강화에는 규제 적용 어려움

- ④ 가상자산 거래소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 도난, 개인정보유출, 시세조작, 내부정보 이용, 자전거래 등이 발생해도 피의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조항 미흡
 ※ 올 상반기 유사수신, 다단계, 거래소 불법행위, 구매대행사기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규모만 2조 8,519억원 규모로 파악됐으나, 피해자 규모조차 집계되지 않음

최근 4년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금액 (출처: 경찰청)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년 6월
피해규모	4,674억원	1,693억원	7,638억원	2,136억원	2조8,519억원

2.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가칭)’ 신설

- 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은 기존의 과세기준 및 금융규제 적용을 어렵게 하는 근본 요인으로, 향후 다양한 디지털자산의 출현과 거래방식, 유통방식이 등장하면 과세 및 관련 규제적용을 위해 기술적 이해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
 ※ FATF에서도 “새로운 혁신기술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공통요인”이라고 지적 (FATF 2차 보고서 108항)
- ② 규제기관의 집행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술적 이해에 기반해야 구축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문해력을 갖춘 새로운 전담기구(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신설 필요
- ③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의 설립목적, 대상, 주요 업무

설립 목적	1. 디지털자산시장 안정화 2. 건강한 디지털자산시장 생태계 구축 3. 디지털금융 기술 육성 및 진흥 4. 디지털자산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
관리감독 대상	디지털자산의 거래가 발생하는 플랫폼 (거래소, 블록체인 네트워크 등)
주요 업무	1. 디지털금융플랫폼 내 불공정행위 점검 (시세조종, 자전거래, 내부정보이용, 해킹, 도난, 개인정보유출 등) 2. 디지털자산 기반의 금융서비스 기술특허 관리·지원 3. 디지털자산 피해 점검 및 대응, 블랙리스트 공유 4.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 및 기술 교육

3. 업권법 제정 및 자본시장법 개정

- ① 우선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상품 조항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적용해 당장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제1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을 ①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②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③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투자성)으로 정의. 또한, 동조 제2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증권을 다시 ① 채무증권, ② 지분증권, ③ 수익증권, ④ 투자계약증권, ⑤ 파생결합증권, ⑥ 증권예탁증권의 6가지 종류로 분류.

- ② 가상자산 투자자 이외에도 종사자 보호, 산업발전 정책 육성, 업종에 따른 이행사항 및 책무 등 가상자산 전반에 관한 규제사항을 업권법으로 제정
- ③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별도 특별법 신설 필요

토론회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